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유만희 의원)

2024. 12.

정원도시국

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 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71호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 본 조례안은

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원이 조성된 후 공원관리청으로 이관 시,

사업준공 전에 공원관리청이 토양 상태 등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함으로써 관리 이관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. 다만, 점검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해 관리청의 권한과 사업절차 등을 고려하여 공사 시행 중 토양 등에 대한 사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